

광주교통공사 임원(비상임이사) 후보 모집 재공고

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광주교통공사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임원(비상임이사)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5년 01월 16일

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I 공모 직위, 인원

직 위	인 원	임명권자
비상임이사	1명	광주광역시장

II 임기 및 보수

- 임기 : 임명일로부터 3년
- 보수 : 지급하지 않음(수당 등 실비 지급)

III 직무내용

- 담당직무 및 직무수행요건

구 분	내 용
담당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○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,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수행
직무수행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개혁성, 리더십, 전문성, 기업가적 능력, 문제해결능력, 청렴도, 준법성, 도덕성

IV

응모자격

-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‘임원의 결격사유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경영의 감시·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,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
2.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,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
3. 경영일반, 회계, 세무, 법률,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
4.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

- 결격사유 :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V

서류제출 관련사항

- 제출기간 : 2025.01.16.(목) ~ 2025.02.03.(월) 09:00 ~ 18:00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, 토요일·공휴일 제외
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(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제출처 : 【우 61999】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(마북동)

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(4층 총무팀)

- 제출서류

- 1) 지원서(사진부착)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(요약), 임원등 예비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
※ 양식(작성요령 포함)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에서 내려 받아 작성

- 2)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각 1부

- 3)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4)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※ 모든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또는 삭제 후 제출

VI

심사방법 및 임용절차

- 서류심사
 - 심사방법 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
 - 심사기준
 - 도시철도사업 전문지식 및 이해력, 경영성과 도출능력, 리더십,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능력, 윤리관 등
 - 합격자 발표 :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
- 임용절차
 - 후보자 추천(임원추천위원회) ⇒ 결격사유 조회 ⇒ 임명(광주광역시장)

VII

기타사항

-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등의 허위사실기재와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임용前 7대 원천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심사기일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에 공고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직무내용, 직무수행요건, 심사기준, 평가요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 내 공사소개 > 경영공시 > 관련법령 및 사규(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)를 참고하시고,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총무팀(☎ 604-8061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1. 병역기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, 신체손상,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
2. 세금탈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, 공제를 받아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3. 불법적 재산증식	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<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>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·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
4. 위장전입	▶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
5. 연구 부정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(박사), 주요 학술지 논문(해외: SCI 및 SSCI급, 국내: 등재지 이상),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·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▶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
6. 음주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▶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
7. 성 관련 범죄 등	▶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, 성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

2. 위 1.~7. 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, 상습성,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3.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
(세금탈루-재정·세제·법무분야 등 / 연구부정-교육·연구 분야 등 / 성 관련- 인권·여성분야 등)